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
----------	-----

2022년 12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한 신 의원(찬성자 18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임시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 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지휘활동 사항에 사고·재난 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 (2)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사항에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현행 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¹⁾를 반영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업무 범위에 피해자와 그 관계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표1]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생략) <신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1. ~ 6. (생략) <신설>	제5조(현장지휘)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 출동 현황

- 최근 3년간('20~'22.9) 화재진압활동 내역을 보면, 총 1만 4,094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인권담당관-2220, 공문시행일 2022. 3.11.), [붙임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중 발췌

-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 인권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임.

건(1일 평균 12.9건)이 발생하여 사망 102명, 부상 74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 구조활동은 총 49만 8,112건(1일 평균 455건)을 출동하여 3만 8,693명(1일 평균 35명)을 구조하였음.
- 그리고 구급활동은 총 149만 6,012건(1일 평균 1,366건) 출동하여 83만 8,165명(1일 평균 765명)을 이송하였음.

[표2]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내역

구분	화재진압활동			구조활동		구급활동	
	출동건수	사망	부상	출동건수	구조인원	출동건수	이송건수
'22.1~9	4,055	28	228	157,402	14,171	466,402	249,283
2021	4,951	37	280	196,860	12,513	551,647	312,411
2020	5,088	37	236	143,850	12,009	477,963	276,471
총계 ('20~'22.9)	14,094	102	744	498,112	38,693	1,496,012	838,165
연평균	4,698	34	248	166,037	12,898	498,671	279,388
1일평균	12.9	0.1	0.7	455	35	1366	765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안 제4조제3항과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각각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현장지휘와 관련한 현장지휘관의 지휘 업무 내용에 피해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²⁾에 따라 현행 조례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21.5.25~'21.11.30)한 후 시민 인권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시장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 됨.

[표3] 인권보호와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처벌 규정

[헌법 제10조,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방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2)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형법 제307호 명예훼손 및 동법 제 31조 모욕 등]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본 개정안과는 별도로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³⁾’에 따라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한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있는 피해자 및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림막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개정안 시행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됨.



[사진] 구조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조치

**[붙임] 1.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3)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현장대응단-1434 (2022. 1. 27)

[붙임] 1.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 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 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 인권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2020년 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파악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권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무엇보다도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보호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그 어느 때보다 재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회·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대응 시스템은 인권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1년도에 서울시는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55개(조례46, 규칙8, 규정1)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영역 : 2개 인권영역(시민, 제도), 4개 평가항목

인권영역	평가항목
시 민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경우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제 도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 서울시의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평가내용 4개 항목에 대해 사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55개 자치법규 중 7개 조례(10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재난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붙 임 :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부.

2022 년 3 월 7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통하여 결과 도출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대학교수 등 참여
- 평가항목 : 4개 항목
-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 부여
 - ② 재난에 대한 교육 및 알권리
 - ③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 ④ 재난 수습주무부서 설정
- 평가결과
- 평가결과 총 7개 조례 10개 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권고내용

평가항목	주요개정 내용	조항수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민의 책무 → 시민의 의무	4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시민의 알권리 및 교육권 강행규정	3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2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부서 수정	1

□ 자치법규 개정 권고목록(7개 조례 10개 조항)

연번	자치법규	관련조항	개정(안)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시민의 <u>책무</u>)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 <u>의무</u>)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② <u>시민은</u>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u>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u>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② <u>시장은</u>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u>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u>
2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u>책무</u>)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u>의무</u>)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시민의 <u>책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u>의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5조(시민의 <u>책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u>의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2조(어린이활동 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u>알릴 수 있다</u> .	제12조(어린이활동 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u>알려야 한다</u> .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u>보호를 위하여</u>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u>보호와</u> <u>사고·재난피해자의</u> <u>인권보호를 위하여</u>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u>(신설) 7 사고 및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모든 활동</u>
7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 및 기관과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u>안전총괄본부</u> 가. <u>상황대응과</u>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4. <u>안전총괄실</u> 가. <u>안전지원과</u>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한 · 신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서준오, 유정인,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지휘 활동 사항에 사고·재난 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 나.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사항에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③ <u>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p>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현장지휘) ①----- -----.</p> <p>1. ~ 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7. <u>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u></p>